

 금융위원회	보도자료			 금융감독원
	보도	2018.4.5.(목) 15:00	배포	

책 임 자	금융위 보험과장 하 주 식(02-2100-2960)	담 당 자	권기순 사무관(02-2100-2963)
	금감원 보험리스크제도실장 박 종 수(02-3145-7240)		정해석 팀 장(02-3145-7244) 이태기 팀 장(02-3145-7243)
	생명보험협회 본부장 신 영 선(02-2262-6621)		김인호 부 장(02-2262-6645)
	손해보험협회 본부장 서 영 종 (02-3702-8580)		김지훈 부 장(02-3702-8571)

**제 목 : 보험회사에 대한 新지급여력제도 도입초안 등 마련
- 보험권 국제회계기준 도입준비위원회 제4차 회의 개최**

- 4월 5일 금융위·금감원 및 보험회사 CEO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, IFRS17 도입준비위원회(17.3월 출범) 제4차 회의를 개최함
- 금번 회의에서는 그간 금융당국과 보험업계 및 보험·회계 전문가가 함께 긴밀히 협의하여 마련한 新지급여력제도* 도입 초안(K-ICS 1.0)과 보험감독회계기준 개정방안을 심의함
- * 新지급여력제도(K-ICS ; Korean-Insurance Capital Standard)는 IFRS17하에서 적용가능하도록 보험 회사의 자산·부채를 완전 시가평가하여 리스크와 재무건전성을 정교하게 평가하는 자기자본제도
- 또한, 향후 충분한 의견수렴과 영향평가를 거쳐 법규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, 제도 개선에 따른 보험회사의 수용도를 고려하여 단계적 적용방안 마련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함
- < 보험권 국제회계기준 도입준비위원회 제4차 회의 개요 >**

 - 개최일시 : '18.4.5(목) 오후 3시
 - 개최장소 : 생명보험 교육문화센터(서울 광화문 센터포인트빌딩 3층)
 - 참석인원 : 금융위 상임위원, 생·손보 협회장, 금감원 부원장보, 회계기준원장, 보험개발원장, 보험연구원장, 보험계리사회장, 보험사 CEO 등(40여명)

<붙임> 제4차 보험권 국제회계기준 도입준비위원회 주요내용

제4차 보험권 국제회계기준 도입준비위원회 주요내용

1 新지급여력제도 도입초안 가용·요구자본 산출방안(K-ICS 1.0)

가. 추진배경 및 기대효과

□ 보험부채 시가평가와 일관성 유지 및 국제자본규제*와의 정합성 확보를 위해 시가평가 기반의 新지급여력제도 도입을 추진

* EU는 '16년 Solvency II를 시행하였고,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(IAIS)에서는 '20년 적용을 목표로 국제적 보험그룹(IAIG)에 대한 자본규제(ICS ; Insurance Capital Standard) 제정을 추진중

○ IFRS17 시행시 현행 원가기준 RBC제도는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자본변동성과 다양한 리스크를 정교하게 측정하는데 한계

□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는 가용자본 및 요구자본의 산출을 통해 보험회사 자본의 質 개선과 리스크관리 강화를 유도하고,

○ 시가기반의 국제적 보험자본규제(EU의 Solvency II와 IAIS의 ICS) 등 국제기준과의 정합성 확보 및 국내 보험산업의 신뢰도 향상* 기대

* IMF의 금융부문평가(FSAP), EU의 규제동등성평가, 해외 신용평가 등

< 그 간의 주요 추진 경과 >

- 新지급여력제도(K-ICS) 도입을 위한 공개협의를 마련·공표('17.3월)
- 新지급여력제도(K-ICS) 필드테스트 수행('17.4~8월)
- 新지급여력제도 도입초안(K-ICS 1.0) 마련을 위해 IFRS17 도입준비위원회 산하 실무작업반 운영('17.4월~12월)
- 新지급여력제도 도입초안(K-ICS 1.0) 공개협의를 배포 및 의견수렴('18.2월)
- 新지급여력제도 도입초안(K-ICS 1.0) 전문가 자문단 자문회의('18.3.29)

나. 주요 내용 및 향후 계획

□ 보험회사의 자산·부채를 완전 시가평가하여 가용자본을 산출하고, 금융·보험환경 악화시 예상손실을 요구자본으로 산출

① **가용자본 산출기준** : 시가평가에 의해 산출된 순자산(자산 - 부채)을 기초로 가용자본을 산출하되,

○ 손실흡수성 정도에 따라 '기본자본'과 '보완자본'으로 분류하고 손실흡수성이 낮은 보완자본에는 인정한도* 설정

* 요구자본의 50%와 기본자본 중 큰 금액

② **요구자본 산출기준** : 보험계약 인수 및 자산운용 등으로 인해 노출되는 위험을 5개 리스크*로 구분하고,

* 생명·장기손해보험리스크, 일반손해보험리스크, 신용리스크, 시장리스크, 운영리스크

○ 99.5% 신뢰수준하에서 향후 1년간 발생할 수 있는 최대손실액을 충격 시나리오 방식*으로 측정하여 요구자본 산출

* 금리·주가·사망율 등 위험요인이 불리하게 변동하는 시나리오에 따른 순자산 감소분을 요구자본으로 측정(Solvency II 및 ICS와 동일한 방식)

□ '18년 중 영향평가(QIS)를 통해 보험회사의 영향을 파악하고, 업계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산출기준을 수정해 나갈 예정이며,

○ 보험회사의 준비상황 및 수용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제도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단계적 적용방안 등도 마련할 계획

<현행 지급여력제도(RBC)와 新지급여력제도(K-ICS) 비교>

구 분		현행 지급여력제도(RBC)	新지급여력제도(K-ICS)
가용자본	자산평가	시가평가 및 원가평가* *대출채권, 만기보유채권 등	완전 시가평가
	부채평가	원가평가 (적정성평가(LAT)로 보완)	
요구자본	리스크 구분	①보험리스크 ②금리리스크 ③시장리스크 ④신용리스크 ⑤운영리스크	①생명·장기손해보험리스크 ②일반손해보험리스크 ③시장리스크(금리리스크 포함) ④신용리스크 ⑤운영리스크
	리스크 측정방식	위험계수방식 (위험계수×위험 익스포저)	충격시나리오 방식 중심 (현금흐름 방식이 중요하지 않은 ②④⑤는 위험계수 방식 적용)
	신뢰수준	99%	99.5%
건전성 기준		지급여력비율(=가용자본/요구자본) ≥ 100%	

2 IFRS17 시행대비 감독회계기준 개선방안

- IFRS17 시행이후 보험계약자 보호 등의 보험감독 목적에 적용될 사업비 배분기준 등 감독회계기준 개선방안을 마련
 - '17.12월 마련한 계리적 가정 등에 대한 개선방안과 함께 현재 보험회사별로 진행 중인 IFRS17 계리·회계시스템의 효과적인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

< 그 간의 주요 추진 경과 >

- 국제회계기준위원회(IASB) IFRS17 최종안 및 시행일 발표('17.5월)
- IFRS17 시행대비 책임준비금 적정성평가제도 개정기준 시행('17.12월)
- 계리적 가정 등 감독회계 개선방안 도입준비위원회 부의('17.12월)

- IFRS17 전환시점에 보유중인 계약의 보험부채 평가손익 측정 기준, 사업비 배분기준 등*을 마련

* 계리가정의 불확실성(위험조정) 측정, 신계약의 예상이익(계약서비스마진) 측정, 변액보험 등 특별계정 평가, 보험계약대출 평가, 임의배당요소 분류기준

- ① **보유계약 평가손익 측정** : 보유계약의 과거 판매시점까지 소급하여 평가손익을 측정하는 것이 원칙이나,

- 상당기간* 이전에 판매되어 통계가 충분하지 않은 계약의 경우 전환시점 공정가치를 이용토록 규정

* 감독당국은 영향평가를 통해 '전환시점 이전 3년, 5년, 9년' 중 하나로 결정할 예정

- 전환시점의 공정가치는 K-ICS 기준의 보험부채 금액 활용

- ② **사업비 배분기준** : 책임준비금 산출시 고려되는 보험계약별 장래 사업비 추정시 회사별 사업비 정책의 차이가 반영될 수 있도록 원칙중심 사업비 배분기준 마련

- 개선방안의 실무적 적용을 원활히 하기 위해 영향평가 실시

- 이와 더불어 현재 진행 중인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IFRS17 실무 이행그룹(TRG) 논의 결과도 개선방안에 지속적으로 반영할 계획

1. 자산·부채 시가평가 및 가용자본 산출



2. 요구자본 산출



3. 지급여력비율 산출

$$\text{지급여력비율} = \frac{\text{가용자본}}{\text{요구자본}} \geq 100\% \quad \text{100\% 미달시 적기시정조치}$$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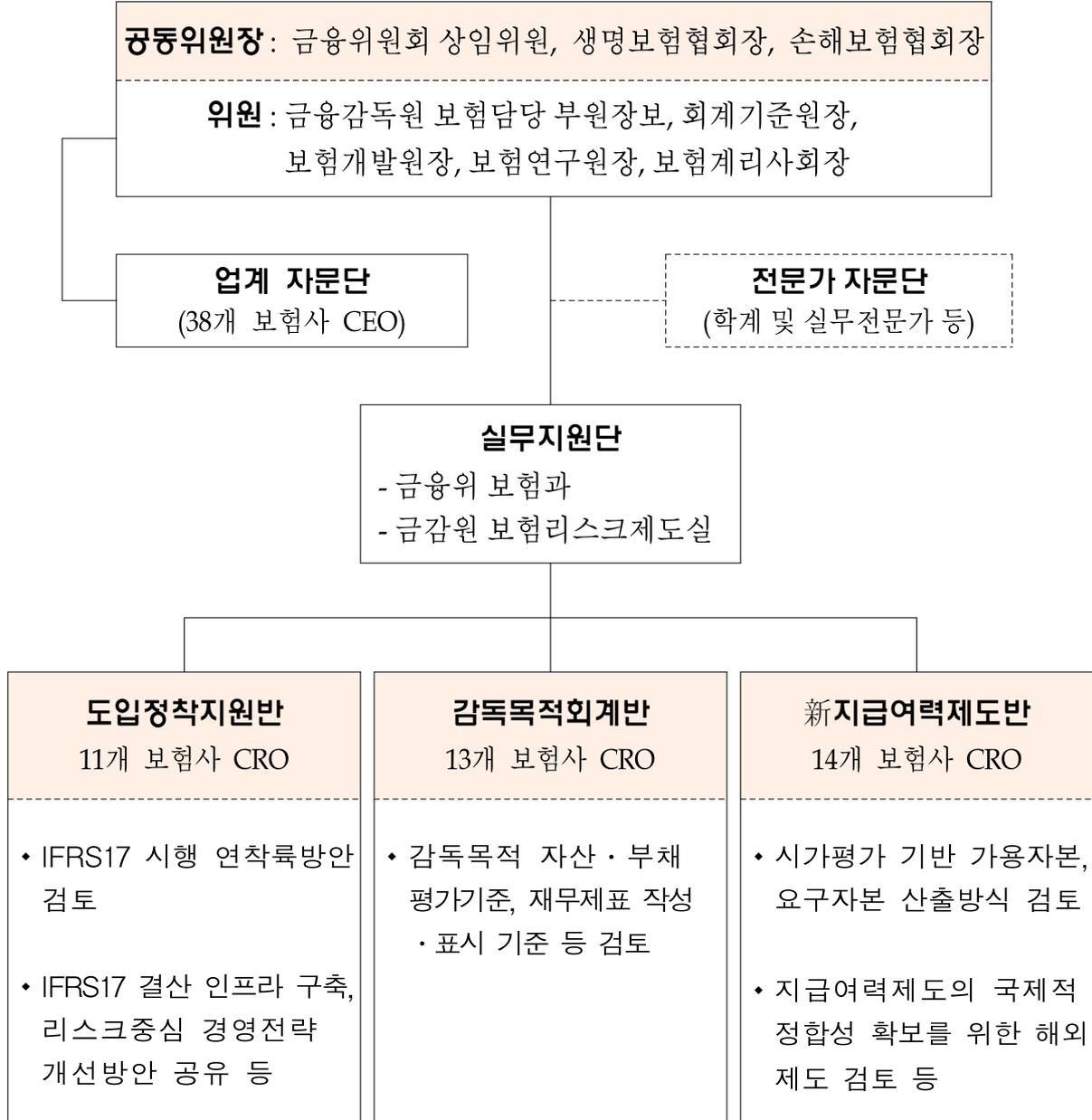
< 新지급여력제도(K-ICS) 요구자본 산출시 반영리스크 분류 >



참고2

보험권 국제회계기준 도입준비위원회 구성

- ◇ 명칭 : 보험권 국제회계기준 도입준비위원회
- ◇ 조직 : 도입준비위원회, 실무지원단 및 실무작업반 등으로 구성



Peer Review반(실무작업반별 검토결과 리뷰 및 제도개선 제안)
회계기준원, 보험개발원, 보험연구원, 계리사회, 보험관련 학회 등



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
<http://www.fsc.go.kr>

금융위원회 대 변 인
prfsc@korea.kr

